등록자:김수경, 등록일시:2015.12.08 23:59, 출력자:성동구, 다운로드일시:2015.12.22 18:01

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　　건　　2015가단108582　부당이득금

원　　고　　은정창

서울 성동구 성덕정19길 3 (성수동2가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, 정주현

피　　고　　서울특별시 성동구

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(행당동, 성동구청)

대표자 구청장 정원오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, 담당변호사 김용호, 조기연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2016. 3. 31.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39-2 도로 63㎡를 미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.

등록자:김수경, 등록일시:2015.12.08 23:59, 출력자:성동구, 다운로드일시:2015.12.22 18:01

2015. 12. 8.

판사 김 수 경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열람용
열람용
열람용

등록자:김수경, 등록일시:2015.12.08 23:59, 출력자:성동구, 다운로드일시:2015.12.22 18:01

청 구 취 지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는 금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는 2015. 3.27 .부터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금 100,000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열람용

등록자:김수경, 등록일시:2015.12.08 23:59, 출력자:성동구, 다운로드일시:2015.12.22 18:01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9-2 도로 63㎡ (이하 '별지기재 토지'라 한다)의 공유자이고,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기재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(갑제1호증 참조).

2.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며,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7. 14. 접수 제43700호로 보존등기를 마친바 있습니다(갑제1호증 참조).

이 사건 토지는 공로인 '성덕정길', '성덕정9길', '둘레7길'이 만나는 교차로에 포함된 토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
3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

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고,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도로포장한 이후로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·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포장하여 점유·사용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 발생한 지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의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4.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범위

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액은 지료감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, 금 20,000,000원을 지료의 일부로 청구하는 바이며, 추후 정확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 피고는 과거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지료 명목으로 금 1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월 지료에 대하여는 추후에 지료 감정을 통하여 정확

등록자:김수경, 등록일시:2015.12.08 23:59, 출력자:성동구, 다운로드일시:2015.12.22 18:01

한 액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5. 결 론

요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·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금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,

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5. 3. 27.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금 1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